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20 선고 2023가단693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믿음 담당변호사 임수진

피고B

변론 종결 2024. 10. 16.

판결 선고 2024. 11. 20.

주 문

-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2. 10.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에게 2010. 3. 23. 500만 원을, 2010. 5. 24. 200만 원을 각 이자 연 12.5%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각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7. 2. 17. "C는 원고에게 5,788,745원 및 그 중 5,387,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 5. 23.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7865).

나. C와 피고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C의 어머니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2. 10. 13. 사망하였고, C는 망인의 재산을 동생인 피고와 공동상속하였다(C의 법정상속분 1/2).

2) 그런데 C는 이후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4.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1) C는 이 사건 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E 주식회사, F조합 등)에 대한 채무(원금 합계 5,797만 원 정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협의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61,184,320원 정도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2,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C가 이 사건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C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C가 G단체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 원고가 그 채무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2024. 4. 22.경 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였는바, 원고가 그와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단체를 통한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하여도, 채권자가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C의 특별수익 등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인을 간병하는 등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점과 C가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이나 C의 특별수익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이는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¹⁾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선의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선의항변도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C에게 C가 상속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현경

별지

1) C가 망인이 아닌 부(父), 조부, 증조부로부터 각 증여받은 재산은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지 않는다.